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92
----------	-------

발의연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임종득 · 성일종 · 김기현
강대식 · 김예지 · 김성원
추경호 · 김정재 · 윤상현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면서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의 학생을 기회균형특별전형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선발 비율·대상 등은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학생의 교육여건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으므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법률에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 시 인구감소지역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해당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의8제2항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의”를 “제4항의”로 한다.

② 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의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학생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8학년도 입학생을 선발하는 사회

통합전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제34조의8(사회통합전형의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대학의 장은 기회균형선발</u> <u>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방자</u> <u>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u> <u>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u> <u>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u> <u>소지역”이라 한다)의 학생이</u> <u>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 이</u> <u>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u> <u>다. 이 경우 대상은 인구감소지</u> <u>역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u> <u>와 같이 거주하고 인구감소지</u> <u>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u> <u>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u> <u>생으로 한정한다.</u>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④ 제1항의 전형 대상 및 제3 항의 모집비율, 선발방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4 항의----- ----- -----.